

영토분쟁의 현안과 전망*

- 독도의 역사성과 영유권에 관한 연구 -

최장근**

目次

1. 들어가면서
2. 고대시대의 지위와 명칭
3. 중세시대 지위와 명칭
4. 근세시대 지위와 명칭
5. 근대일본 개국기의 지위와 명칭
6. 근대 한국침략과 식민지통치기의 지위와 명칭
7. 전후부터 대일강화 시기까지의 지위
8. 나오면서 -전망과 해결방안-

1. 들어가면서

영토의 귀속문제는 국제법 관점에서 무주지의 토지를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의사(intention)와 그 토지에 대한 실효적 관리(effective administration)행사를 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누가 먼저 영토를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해왔는가 라는 역사성과, 현재 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가를 소속결정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동해상의 작은 섬 독도에 대해 한국은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은 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과 독도와의 관련성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일본의 요건에 맞추어 '현재 국제법 하의 영토취득요건은 영토취득 국가의사, 국가의사의 공적 공표, 영토를 취득하는 적당한 세력의 수립(독도주변 측량과 강치의 노획) 이라고 하여 국제법적 영유권주장의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금에 의해 작성되었음(KRF-2002-072-BM2059).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책임연구원 일본정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역사상 시대별 영토취득을 위한 국가의사에 관해 고증한다. 둘째, 역사상 등장하는 독도의 시대별 명칭변천에 대한 의의를 고증한다. 셋째, 한국의 지속적인 독도경영과 근대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의 역사적 의의를 고증한다. 즉 통사적으로 영토주권에 대한 국가의사, 명칭의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연구방법은 한일양국 학자에 의해 행해진 선행연구에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은 일본사와 한국사 속에서 독도가 차지하는 지위를 정치학적측면에서 고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역사학적측면에서 고문헌을 발굴하여 해석한다든가, 이를 국제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또 문헌학적으로 고문헌에 나타나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양국의 입장에서 영유권을 고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²⁾

2. 고대시대의 지위와 명칭

고대시대 한반도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있었다. 그 이전의 많은 소국이 이들 삼국에 복속되었다. 같은 시기에 일본열도에는 30개정도의 소국이 있었는데, 이들 소국을 통합하여 大和국가가 건설되었다. 특히 삼국시대 역사서에 독도와 관련되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한반도의 신라에는 于山國이라는 소국이 서기 512년에 통합되었다는 것이다.³⁾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소국이었다. 울릉도의 범위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울릉도에서 보이는 주변 모든 섬이 우산국의 통치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후세의 기록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高麗史』에서는 “신라 때는 우산국 (중략) 일설에 이르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2도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해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⁴⁾ 우산국은 원래 울릉도와 于山島 두 섬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왕조가 편찬한 『世宗實錄』 「지리지」(1432년과 1454년 편찬)에 『우산과 울릉의 두 섬이 현(울진현)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다. 2도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시대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다』라고 했는데,⁵⁾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한 날 보인다는 섬은

1)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1996, pp.266-267. 일본의 항의서한 참조

2) 주로 인용되는 논문의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역사학적측면에서 분석한 논문으로는 신용하, 山辺健太郎, 堀和生, 梶村秀樹, 국제법적측면에서 분석한 논문으로는 이한기, 김명기, 김영구, 김병렬, 高野雄一, 문헌학적측면에서 분석한 논문은 川上健三, 熊野良一 등이 있다. 그 외는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1996, pp.321-328 참조.

3) 『三國史記』新羅本紀 卷4, 智證麻立干 13년: 列傳 卷44, 異斯夫條

4) 『高麗史』卷58, 地理志3, 蔚珍縣條

5) 『世宗實錄』卷153, 地理志 江原道 蔚珍縣條

독도뿐이다. 그러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于山島가 울릉도에 포함되어 있는 屬島로 인식되었다는 말이다. 1808년의 조선왕조가 편찬한 『만기요람』 군정 편에서도 「울릉도와 于山島는 우산국의 땅이며 于山島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이다」라고 하여,⁶⁾ 우산국은 울릉도와 于山島로 되어 있다고 했다. 于山島는 松島(독도)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이처럼 고대시대 독도가 우산국의 일부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기록이 별로 없던 당시(고대시대)로서 2개의 작은 돌섬에 불과한 독도의 명칭이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후세에서는 우산국에 울릉도와 于山島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于山島와 울릉도가 우산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역사와 조선시대 역사서에서 구체적으로 고대시대의 우산국에 울릉도와 于山島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자연스러운 인식이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于山島의 존재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처럼 영유권 분쟁 등에 의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국토개념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는 바다에 대한 영역 개념은 없었고, 단지 섬에 대한 영역개념만 있었다. 본토에서 울릉도를 복속할 수 있을 정도니까 가시거리에 있는 독도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터전으로서 우산국영토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생활터전이라는 말은 국제법적 개념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영유권 행사를 의미한다. 분명히 이런 의미에서 독도는 신라영토임에 분명했다.

반면, 당시 일본의 고대 大和시대에 야마토인이 울릉도(독도를 포함해서)를 생활터전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일본에서도 『大日本史』에 “新羅字流麻島人至 宇流麻島卽芋陵島也”라고 했고,⁷⁾ “有新羅國 于陵島人”이라고 했다.⁸⁾ 독도는 지리적 위치나 환경적으로 볼 때 울릉도와 분리해서는 그 가치를 말할 수 없는 존재로서 단지 울릉도의 屬島로서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영토인 우산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중세시대 지위와 명칭

중세시대는 일본의 鎌倉, 室町, 戰國시대이고, 한국은 고려, 조선시대 초기 중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특히 한국의 고려시대와 일본의 鎌倉시대에는 양국간의 교류가 그다지 없었던 시기이다. 일본의 해적들이 한반도에 침입하여 고려는 남쪽의 일본해적과 북쪽의 거란족의 침입으로 국운이 기울어져갔다.⁹⁾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

6)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28.

7) 『大日本史』열전5(卷234), 高麗

8) 『大日本史』第2篇의 5, 寛弘元年 3月 7日條

해서라도 국토에 대한 개념이 강했을 것으로 본다. 고려시대의 역사서에는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신라 때는 于山國 智證王 12년에 항복했다. (중략) 의종 11년 왕은 울릉도가 땅이 넓고 토질이 비옥하며 또 옛날에 州縣을 두었고, (중략) 溟州道 監倉 金柔立을 파견하여 조사했다. 일설에 이르기를 于山과 武陵은 본래 2도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해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⁰⁾라는 것처럼, 고려시대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영토였다는 것이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하면 보이는 섬은 분명히 독도뿐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울릉도민이 독도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가 직접 울릉도와 독도를 답사한 것이 아니라, 지방관리의 보고에 의거해서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섬의 명칭라든가, 위치가 오늘날처럼 정확할 수 없다.

결국 고려 멸망의 많은 원인 중에 북쪽의 거란 침입과 남쪽의 왜적 소란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조선 태종3년(1403) 8월에는 “강원도 감사의 품계에 따라 강원도의 武陵島 거주민들을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했다.”¹¹⁾ 강원도에서 군역과 납세를 피하기 위해 도망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울릉도를 비웠다. 또한 울릉도는 왜구의 침입이 잦은 곳이었다. 태종7년(1407) 3월 對馬島主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면서 對馬島主 宗貞茂가 平道全을 조선조정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헌납하고 왜구들이 나포해간 포로를 송환하면서 동시에 울릉도에 對馬島인을 이주시키고 부락을 형성하게 하여 對馬島主人 그가 통솔하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태종은 “對馬島인이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國境을 넘어오는 일이 생기면 저들도 반드시 말썽을 부릴 것이다”라고 하여 거부했다. 이처럼 조선 태종이 직접 울릉도를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416년 9월 태종(호조판서 朴翺은 군역을 피하려는 자와 왜구의 노략질로 강원도 침입을 막기 위해 金麟雨를 武陵等處按撫使라는 직책으로 천거하면서 울릉도와 그 외 지역을 완전히 비우게 했다.¹²⁾ 호조판서 박습이 이전 강원도 관찰사 시절에 “울릉도의 둘레는 7息이며 그 옆에 작은 섬이 있었다”고 하여 울릉도와 이름 없는 작은 섬(竹島 및 독도)의 관리를 명했던 것이다.¹³⁾ 1417년 2월 9일 대신회의에서는 「우산, 무릉 거주인 刷出의 便否를 의논케 한 바, 于山, 武陵等處에 다시 들어가 居住人을 데리고 육지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¹⁴⁾ 공도정책이 취해진 곳은 울릉도와 그 외의 다른섬, 즉 죽도(竹島)와 독도임을 알 수 있다.

9)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28.

10) 『高麗史』卷58, 地理志3, 蔚珍縣條

11) 『太宗實錄』太宗7年3月 庚午條

12) 세종1425년8월 김인우를 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하여 군인 50명을 주어 병기와 3개월분 식량을 주어 1423년에 울릉도로 도망한 28명의 거주민을 소환하도록 했다

13) 『太宗實錄』太宗16年9月 庚寅條

14) 『太宗實錄』太宗17年2月 乙丑條

1481년 조선 성종 때는 『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되었고(현재 전해지지 않음), 1531년 『新增東國輿地勝覽』(卷45, 蔚珍條)이 편찬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조선왕조인 조선 영토 지리해설서)에 「于山島 울릉도... 2도는 縣(울진현)의 정동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하늘로 곧게 솟아 있으나, 남쪽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청명하면 봉우리 위의 나무와 산 밑의 모래톱이 역력히 보이고 바람이 잔잔하면 이틀에 도달할 수 있다.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1도로서 地(범위)는 백리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이틀에 도달」하는 섬, 于山島는 분명히 독도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틀이 걸리는 섬의 모습이 육안으로 생생히 보인다는 표현은 전언에 의한 기록이므로 다소 혼돈된 부분도 있는 듯 하다. 성종은 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켜서 조선영토로 관리했다.¹⁵⁾ 그 부속지도인 「八道總圖」 및 「道別島」에서도 울릉도와 于山島를 별개의 섬으로 명시하여 조선영토라는 강한 영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¹⁶⁾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本一島說」과 세종실록의 「本2島」는 기록담당관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방관의 보고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說」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¹⁷⁾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공도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여 영유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구의 침입과 울릉도 주민의 도주를 막기 위해 섬을 비우고 정기적으로 관리했던 것이다. 세종 때에는 『世宗實錄』「地理志」에 신라시대의 우산국으로 「東海에 于山島와 무릉도 2섬이 울진현 정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이는 곳에 있었다」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世宗實錄』에 「本島」라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면, 본도는 울릉도이고, 독도를 속도로 취급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타국에 몰래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¹⁸⁾ 울릉도와 무릉도가 「타국」의 영지가 아니라고 하여 영유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세종 때에 공도정책으로 일본인의 울릉도와 독도 점거를 우려하기도 했지만,¹⁹⁾ 꾸준히 관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했다.

당시 국가가 아닌 유식자 중에서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鄭尙驥(1678-1752)의 「東國地圖」와 1822년 「海左全圖」, 金大建의 1846년 「朝鮮全島」에서는 울릉도(서쪽)와 于山島(동쪽)의 위치를 정확히 조선지도에 그려 넣어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다.²⁰⁾ 그런데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전국 지도를 그릴 때 일일이 답사

15)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29.

1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蔚珍縣條

17) 고종황제는 강화도조약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잠입소식을 듣고 울릉도 감찰을 명하면서 「울릉도 부근에 있는 松竹島와 芋(于)山島의 相距遠近 또는 松島, 竹島, 芋山島의 3도를 합쳐서 鬱陵이라고 통칭한다는 설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승정원일기』고종19년4월7일條), 松島, 竹島, 芋山島의 3도를 합쳐서 1개의 울릉이라고 부른다는 내용과 상통하는 말이다

18) 『世宗實錄』卷29, 世宗7年8月 甲戌條.

19) 『世宗實錄』卷73, 世宗18年 潤6月 甲申條

20)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29.

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미 존재하던 지도를 참고로 그렸을 것이고, 지도상의 문제가 있을 때만 이를 수정하여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조선조정은 물론이고, 지리학자, 울릉도 주민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일본에서도 울릉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1004년 일본의 平安시대에 “고려국의 울릉도 사람이 표류되어왔다(寬弘元年(1004年) 高麗藩徒 芋陵島人 漂至)”라고 하여,²¹⁾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고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보고 있는 기록은 없고 당연히 독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무관한 섬이었다. 독도의 명칭에 관해서는 고대시대에는 특별한 명칭으로 불리었다는 기록은 없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조정에서 독도를 「于山島」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태종, 세종을 거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공도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가 민간에게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함경도 어부 중에 于山島(독도)를 三峯島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1470년 12월 성종은 왕이 된 직후 함경도 관리의 보고에 따라 삼봉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명하여 1476년 9월 그 섬이 울릉도가 아닌 독도임을 확인했다. 三峯島라고 불리는 섬을 조사했다는 것은 당시 조정이 「于山島」를 조선영토로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통신과 정보가 발달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독도가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려시대에는 울릉도가 鬱陵 武陵 芋陵 羽陵으로 불리었고, 독도는 于山(芋山)으로 불리었던 것이다. 于山島라는 명칭의 유래는 원래 울릉도와 독도가 우산국의 땅이었는데, 본도가 「鬱陵 武陵 芋陵 羽陵」이라는 명칭이 생겨나서, 우산국의 일부였던 또 하나의 섬이었던 독도는 于山島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²²⁾ 독도의 명칭은 민간에 의해서 다양하게 불리어 질 수도 있는데, 고려 및 조선조정에서는 于山島라는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4. 근세시대 지위와 명칭

근세시대는 조선 중후기에 속하고 일본의 에도시대에 속한다. 조선조정은 1417년 이후 울릉도와 독도를 공도정책으로 비우고 대개 3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섬을 관리해왔다. 그 사이에 주로 對馬島人들에 의해 이들 섬의 존재가 일본에 알려졌고, 특히 1592년 일본의 조선침략이후 울릉도와 독도는 隱州 어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섬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조선조정은 황폐해진 국내 수습 때문에 공도정책중인 울릉도를 소홀

21) 『大日本史』卷234, 列傳 5, 高麗

22)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130.

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타서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울릉도(당시 일본인은 磯竹島라고 칭했음)에 잠입하여 섬을 분탕질하고 있었다.²³⁾ 對馬島主는 德川(家康)막부의 허락(서계)을 받고 1614년 동래부사(부사 尹宗謙)에게 「磯竹島를 探見하러 가는데 풍량이 우려되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는 공도정책 중에 있던 울릉도에 대한 조선 조정의 영유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⁴⁾ 당시 조선은 통신사를 보내어 일본과 서로 국교를 맺고 있었다. 조선조정(예조)은 비변사의 품계에 따라 경성감사와 동래부사에게 지시하여 對馬島主에게 보고하여 일본인의 내왕을 금지하도록 명했다.²⁵⁾

원래 도쿠가와 막부는 외국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외국에 나가있는 일본인은 물론이고 일본인의 외국으로 출항을 금지하고 있었다. 만약 해외로 도항할 때에는 막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온주어부 大谷과 村川가 울릉도가 비워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막부는 이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울릉도(1618년)와 독도(1660년경)의 도항면허를 허가했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어부의 도항이 허락되었던 시기, 1667년 出雲(雲州)藩 大名는 藩士 齋藤豊仙에게 隱岐島 조사를 명했다. 그 조사결과인 『隱州視聽合記』를 막부에 헌상했다. 그 내용은 「隱岐는 북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隱岐島라고 한다... 2일 1야를 가면 松島가 있다. 또 1일 거리를 가면 竹島가 있다. 무인도인 이 2섬은 雲州에서 隱岐를 보는 것처럼, 고려에서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 경계는 隱州까지이다」라는 것이었다.²⁶⁾ 즉 이들 어부들이 藩에 울릉도, 독도 편입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1667년 이전에 독도 및 울릉도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出雲(雲州)藩과 막부에서는 이들 섬을 일본영토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1417년 공도정책 이후 주로 對馬人들에 의해 이들 섬이 알려지긴 했으나, 근세의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에 의해 隱州 주민의 울릉도와 독도 부근까지 왕래가 빈번히 행해질 수는 없었다. 1618년 도항면허 이후 본격적으로 도항이 시작되었는데, 급기야는 1667년경 出雲(雲州)藩에서 일본영토 편입까지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에 어부들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서 竹島, 독도를 조선영토 松島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부는 임진왜란이후 통신사의 왕래로 조선조정과 화해를 모색하고 있었고, 또 쇄국정책을 단행하여 이국 이역에 대한 영토 확장욕은 없었기 때문에 조사결과 조선영토임로 확인됨으로서 무리한 영토편입을 원치 않았다. 독도의 명칭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1660년 伯耆州 米子の 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 두 가문의 왕복문서에 鬱陵島內之松島, 竹島近所之小島, 竹島近邊松島, 竹島近所松島 라는 명칭이 자주 등장한다. 울릉도를 鬱陵島 내지 竹島라고 불렀고, 독도는 松島 내지 작은 섬(小島:특정한 호칭이 없었음)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즉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23) 이수광, 『芝峰類說』卷2, 地理部, 島의 鬱陵島條

24) 『邊例集要』卷17, 鬱陵島條

25) 『增補文獻備考』卷31, 輿地考19, 于山島, 鬱陵島條

26) 『隱州視聽合記』卷1, 國代記部.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호칭 없이 小島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다.

이들 두 가문은 울릉도와 그 길목에 있는 松島에 대해서도 도해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으로 보아 막부에서도 竹島와 松島를 같은 지역에 있는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隱岐島에 대해서는 도해면허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본영토의 隱岐島와는 달리, 울릉도, 독도를 외국영토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막부도 주민들의 견해에 따라서 일본의 경계를 隱岐島까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주민들은 독도를 松島라고 부르고 있었고, 울릉도를 竹島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막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막부는 1667년 이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면서도 大谷 등의 隱州어부들의 울릉도 및 독도 항해를 묵인하고 있었다.²⁷⁾ 1693년 한일양국어부의 충돌에 의한 안용복의 활약으로 1699년 막부를 비롯해서 隱岐島主, 伯耆主太守, 關白, 급기야는 對馬島太守까지 완전히 울릉도뿐만 아니라 「于山島」(독도)까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막부는 쇄국을 방침으로 하고 있었기에 도항면허를 취소시키고 울릉도 및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도항을 금했다. 이를 어긴 일본인 중에서 사형에 당한 자도 있었다. 막부가 1699년 울릉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이후, 일본막부를 비롯한 관청은 물론이고, 지리학자들까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 林子平(1738-1793)의 『삼국통람도설』(1785년)의 부속지도인 「대일본지도」와 「삼국접양지도」, 그리고 제작자 미상의 「總繪圖」(18세기 후반)에서 울릉도와 于山島를 조선영토(朝鮮の持ち)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²⁸⁾ 울릉도, 于山島를 비롯한 한일간의 국경분쟁이 생긴 이후 민간 유식자들도 서서히 국경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하야시가 그린 지도는 색으로 국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일본막부가 결정한 사실은 이들 지도에 의해 민중들에게 알려져 동해의 울릉도와 于山島는 조선영토로 인식되어져갔던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도 울릉도와 于山島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808년 조선왕조가 편찬한 『만기요람』「군정편」에서는 「여지도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于山島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국은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이다」라고 했다.²⁹⁾ 그러나 일본 막부는 정식으로 울릉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여 영유권인식은 없었다. 일본의 쇄국정책은 1854년까지 계속되어 울릉도(그 당시 독도는 작은 암초로서 일본인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 대한 이런 인식은 明治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조선후기(1906년 이전) 독도에 대한 명칭은 조선조정에서는 울릉도는 울릉도이고, 독도는 于山島라고 했다. 이 명칭은 조선조정은 물론이고, 관찬서적 및 지도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조선영토로 인

27) 이는 마즈마에 번에게 이국 이역으로 여기고 있었던 아이누모시리(아이누민족의 땅)와의 교역권을 인정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28)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37.

29)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28.

식하면서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라고 칭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에서 편찬한 『만기요람』(1808)에서 「울릉도와 于山島는 우산국의 땅이며 于山島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³⁰⁾ 『속중실록』에서 안용복은 「송도는 곧 于山島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했던 기록으로 보아 松島가 오늘날의 독도임에 분명하고,³¹⁾ 조선실록에 등장하는 于山島가 독도임에 더욱 분명하다.

여기서 양국어민간의 영토분쟁은 울릉도, 독도분쟁이었다. 독도는 일본의 오키도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암초로 이루어진 바위섬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울릉도를 둘러싼 분쟁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근접해있어 본도-속도관계에 있었다는 점과, 분쟁에서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거론되었다는 점, 도항금지로 당연히 松島·竹島免許가 취소되었다는 점, 막부의 도항금지 조치이후 松島·竹島 모두 도항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막부를 비롯해서 어부들도 울릉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1869년 明治정부가 「竹島와 松島가 조선부속도가 된 시말」을 조사하도록 한 것을 보더라도, 일본정부 보관문서에 1699년 한일간의 영토분쟁사건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더욱 명백하다.

5. 근대일본 개국기의 지위와 명칭

(1) 일본의 울릉도·독도 조선영토 인정

일본의 근대는 明治, 大正, 昭和 초기이다. 한국은 조선후기, 일제통치시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明治초기는 일본이 국민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해 국경을 확정하는 시기였다. 1853년 패리의 내항이후 일본은 1854년 해외에 문호를 개방했다. 1854년에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공세로 에도로프 섬 이하(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섬 포함)를 일본령으로 하는 북방경계를 결정했다(사할린 경계는 합의를 보지 못했음). 이를 계기로 근대 일본은 서서히 국경확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영토확장 의식도 생겨났다. 경계의식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도 생겨났다.³²⁾ 明治정부(외무성)는 종래의 對馬藩을 통한 간접적인 조선과의 교류에서 직접적인 국교협정을 위해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정을 조사했다. 일본의 태정관(총리부)은 정부기록에 의해 1699년 막부가 울릉도와

30)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28.

31) 『肅宗實錄』肅宗22年(1696)9月 戊寅條.

32) 북방 경계를 위해 1869년 北海島의 일본영토편입, 남서방의 경계확정을 위해 1871년 廢藩置縣 단행과 동시에 琉球藩 설치, 남방의 경계확선을 위해 小笠原諸島 개척사과견 서방의 경계를 위해 독도 울릉도 조사를 단행했다.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울릉도 독도의 영토편입을 위해 佐田白芽, 森山茂사신을 은밀히 조선에 파견하여 「竹島와 松島가 조선부속도가 된 시말」을 조사하도록 했다.³³⁾ 조사결과를 「松島는 竹島の 인도로서 松島の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게재된 서류도 없다. 竹島の 건에 대해서는 元祿度後는 잠시 조선으로부터 居留를 위해 差遣한바 있다. 당시는 이전과 같이 무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했다.³⁴⁾ 일본 사신들은 조사의 미흡으로 울릉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시킨 1699년의 영토분쟁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³⁵⁾ 일본은 1875년 운양호로 조선에 압력을 넣어 이듬해 불평등한 「조일수호조규」를 수용하도록 하여 일본어민들의 조선 근해항해를 가능하게 했다. 어민들은 울릉도에 잠입하여 벌목과 수산물의 채취에 종사했고, 급기야는 울릉도 영토편입을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지만, 일본정부는 조선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일본내무성은 지적조사와 동시에 일본 전국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縣의 조사보고를 요청했을 때 시마네 현은 竹島와 松島の 시마네 현 편입 여부를 타진했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5개월여 조사결과, 위의 조선국정조사서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서 관리의 보고와 달리, 「元祿12년(1699년)에 해결된 竹島와 松島가 조선영토이므로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시했다.³⁶⁾ 이는 막부가 1699년 조선조정에게 통보한 결정을 존중한 것이었다. 1877년 3월 20일 태정관(우대신 岩倉具視)에서도 「竹島와 그의 1개의 섬(松島)은 일본과 무관」하다고 내무성에 지령했고, 1877년 4월9일 시마네 현에도 지령했다.³⁷⁾ 일본의 明治정부 즉 내무성, 외무성, 태정관은 울릉도 및 독도가 조선영토임이 명백하다고 하여 시마네현에 대해서도 일본지도에 편입시키지 말 것을 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내의 독도, 울릉도에 대한 인식은 일본 육군성 참모국이 제작한 「조선전도」(1875년), 해군성이 제작한 「朝鮮東海岸圖」(1876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松島를 조선영토로 표기했다. 일본해군성 수로국에서 제작한 「朝鮮東海岸圖」2판(1887년)과 3판(1905년), 일본해군성이 제작한 「조선수로지」, 세계수로지인 「寰瀛水路誌」제2권제2판(1886년)에서는 「리양코르島列岩」이라고 하여 조선영토로 표기했다.³⁸⁾ 이처럼 일본 육군성, 해군성은 물론이고, 일본정부의 太政官, 내무성, 외무성, 시마네 현까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³⁹⁾

33) 「外務省より太政官辦官への伺書」, 『朝鮮國派遣員に對する 查事項指令に關する 伺並に之に對する 太政官の内達書』, 日本外務省調査部編, 『日本外交文書』第2卷 第3冊, 文書番號 574, 1869年1月1日字, pp. 265-268.

34) 日本外務省調査部編, 『日本外交文書』제3권 事項, 文書番號 87, 1870年 4月15日字, 「外務省出仕佐田等ノ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p. 137.

35) 崔長根 「明治政府の朝鮮東海における領土政策」, 『大學院年報』1994 참조.

36) 「外務省出仕佐田等の朝鮮の國交際始末內探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日本外務省調査部編 『日本外交文書』제3권 事項6 文書番號87, 1870年4月15日字, p. 137.

37) 「太政官指令文書」, 『公文錄』內務省之部1, 1877年3月20日條.

38) 日本海軍省水路部, 『寰瀛水路誌』제2권제2판, 1886, pp. 255-256. 1889년의 「朝鮮水路誌」에서도 松島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日本海軍省水路部, 『朝鮮水路誌』1894, pp. 255-256).

(2) 조선조정의 울릉도·독도개척

이처럼 일본의 공적인 기관에서 울릉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불법으로 울릉도에 잠입하고 있었다. 1876년 1월 강화도조약이후 조선의 3개 항이 개항되면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잠입하여 벌목을 자행했다. 일본어민들은 「大日本國 松島榎谷 明治二年二月十三日 岩崎忠照 建之」라는 표목을 세워 울릉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려는 분위기도 있었다.⁴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조선조정에서는 지방관제 상 강원도 울진현 소속 울릉도를 平海縣으로 이속하여 관리했다.⁴¹⁾ 조선조정은 1881년 5월 일본외무성에 항의문서를 보내어 일본인의 도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외무성은 北澤正誠에게 재차 울릉도 영유권 조사를 위촉했다. 그는 『竹島考證』을 집필하고, 「竹島叛圖所屬考」라는 보고서를 외무성에 제출하여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보고했다. 외무성은 1881년 10월 24일(음력) 조선조정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도항하여 벌목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철수했다고 했다.⁴²⁾ 고종황제는 「(1) 울릉도에 밀입한 일본인들에 대한 檢察, (2) 울릉도 부근에 있는 松竹島와 芋(于)山島의 相距遠近 또는 松島 竹島 芋山島의 3도를 합쳐서 鬱陵이라고 통칭한다는 설도 있는데, 그 실제 형편과 設邑하기에 적합한 農耕處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지도를 편찬하여 올릴 것」을 명했다.⁴³⁾ 1882년 4월 李奎遠(일행 102명의 검찰사)이 검찰사로 파견되었다. 한국인이 140명, 일본인이 78명이 혼재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⁴⁴⁾ 이규원의 조사에 의해서 여전히 일본인들이 벌목과 어획을 자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1882년 6월 조선왕조(禮曹判書)는 일본외무성에 다시 일본인의 삼림채벌과 무단침입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수신사 박영효도 제물포조약에서 일본 外務卿에게 울릉도 불법침입과 무단 벌목에 강경히 항의했다. 일본외무성은 1882년 12월 도항금지령을 내렸다고 회신해왔고,⁴⁵⁾ 실제로 1883년 1월 22일 태정대신이 정식으로 도항금지령을 내렸다. 한편 조선조정은 1883년 3월 김옥균을 「東南諸島開拓使 兼 管捕鯨事」로 임명하여,⁴⁶⁾ 「東南諸島」, 즉 고종황제가 지적했던 울릉도, 竹島, 독도를 관리하도록 명했던 것이다.⁴⁷⁾ 조선조정의 요구에 의해, 일본 내무성은 1883년 9월 관원 및 순사 31명을 月後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에 불법잠입 일본인 254명 전원을 쇠환

39) 1905년 2월 독도를 죽도라는 이름으로 島根縣 편입이후에 제작된 1907년의 「일본수리지」제 4권에 처음으로 隱岐島 북방의 작은 섬으로 그려 넣었다(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40).

40) 이규원, 『鬱陵島檢察日記』高宗19年5月初6日條

41) 『江原監營官牒』第6冊, 壬午年10月 到付.

42) 「日人ノ蔚陵島ノ伐木禁止ノ件」, 『舊韓國外交文書』제1권 日案1, 文書番號 75.

43) 『承政院日記』高宗19年4月7日條

44) 이규원, 『鬱陵島檢察日記』.

45) 「邦人ノ蔚陵島渡航禁止に關スル件」, 日本外務省調査部編 『日本外交文書』제15권 事項0, 文書番號 159, pp. 291-294.

46) 『高宗實錄』高宗20年(1883)3월6日條

47) 『承政院日記』高宗19年4月7日

해갔다.⁴⁸⁾ 조선조정은 울릉도 개척사업이후 적극적으로 이주를 추진하여 1897년 3월경에는 12개동 397호에 1,134명(남자 662, 여자 472명)이 거주했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 후 삼림채벌을 위한 일본인의 불법 침입은 중단되지 않았고, 일본 天壽丸 선장은 도장에게 미곡을 주고 삼림채벌권을 독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 및 개척사는 채벌권을 불법으로 준 도장을 파면 처벌하고, 조선정부와 조선인이 직접 채벌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1884년 8월 일본 萬里丸 선장과 판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울릉도 삼림을 담보로 차관을 교섭하기도 했다.⁵⁰⁾ 1896년 고종황제가 러시아공사관에 머물고 있을 때, 제정러시아는 두만강유역과 울릉도의 삼림벌채권을 이권으로 침탈해갔다. 삼림채벌권을 둘러싼 러일 양국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⁵¹⁾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1899년 9월 15일 대한제국정부는 일본인 철환을 요구했고,⁵²⁾ 그해 10월 일본인과 합동으로 울릉도 조사단을 파견하여 합동조사를 시행했다. 일본은 1900년 9월 초순 일본조사단의 보고에 의거하여 사실상 일본인 철수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일본인이 울릉도에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고, 그 책임은 울릉도 잠일을 묵인하고 종용한 귀국 도감에게 있다. (2) 도벌은 도감과 합의나 합의매매에 의한 것이며, (3) 울릉도 도민과 일본인과의 상업무역은 도민의 희망에 의한 것이고 도감이 장차 수출입세금을 징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4) 울릉도민의 본토와의 교통은 일본인 거주자 때문에 그 편리함을 얻고 있는 즉, 일본인 거류는 울릉도민의 불가결한 요건이라는 것이었다.⁵³⁾ 게다가 일본공사는 울릉도에 내거하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철환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대한제국 외부는 이를 거절하고 거듭 일본인의 철환을 요구했다.⁵⁴⁾ 조선조정은 국호를 대한제국(1897년 이후)으로 바꾸고 외곽 국경지역의 영토를 재정비했다.⁵⁵⁾ 1900년 10월25일 「칙령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 도감을 군수로 개칭)으로 바꾸어 울릉 전도와 竹島, 石島를 관리하도록 했다. 1900년 울도군으로 개칭된 이후, 울릉도는 1901년 2월 학교를 설립했고,⁵⁶⁾ 울릉도의 開運丸이 풍랑으로 파손되었을 때, 군수의 지원 아래 保合丸 2척을 구입하는 등 울릉도의 발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불법침입은 여전했다. 일본은 1901년 말 일본인 단속을 구실로 일본경찰관을 파견 주재시킬 것을 계획했고, 조선조정의 허가 없이 1902년 3월 일본 경찰관주재소를 만들어 부산 일본영사관의 일본경부 1명과 순사 3명을 울릉도로 보내어 주재하도록 했

48) 『日本外交文書』제16권, 事項10, 文書番號132, 「引上者ノ處置ニ關スル件」, 文書番號 133, pp. 311-338.

49) 「外邦通信」, 『獨立新聞』1897年4月8日字

50)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184.

51)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185.

52)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186.

53) 「照覆」, 『內部來去案』第13冊, 光武4年9月12日條「照會」, 光武4年9月15日條

54) 「雜報:照駁收稅」, 『皇城新聞』1900年9月14日字.

55) 1902년 간도에도 군 설치를 의도했으나, 청국의 항의로 실패로 끝났다.

56) 「雜報:鬱島設校」, 『皇城新聞』1901年2月27日字.

다.57) 일본의 울릉도 침범이 본격화되어갔다. 대한제국은 1903년 4월 沈興擇을 군수로 파견하여 일본인의 재목벌채를 일체 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십수 년의 관습이 되었는데, 벌목금지 요구에 응할 수 없으니, 서울의 일본공사에 조회하여 협의하라는 것이었다.58) 대한제국의 내부는 외부를 통하여 일본공사에게 「不通商區」 안인 울릉도에 일본경찰관을 주재시킨 것은 조약위반임을 지적하여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일본인 어촌을 설치하여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던 시기에도 계속적인 盜伐을 보호 장려했던 것이다.59)

근대에 있어서 독도호칭에 관해서 살펴보자. 1900년 10월25일 「칙령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바꾸면서 울릉 전도와 竹島, 石島를 관리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石島」는 고종황제가 지적했던 竹島, 芋山島 중의 芋山島(독도)를 말한다. 「于山島」는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서 조선조정에서 사용했던 독도의 공식명칭이었다. 고종은 이 「于山島」를 「석도」로 바꾸어 호칭했던 것이다. 조선조정이 왜 호칭을 바꾸었을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조정의 울릉도 이주정책에 의해 많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거주하게 되었고, 일본인들도 잠입하게 되었다.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인 「于山島」라는 공식명칭을 알 리가 없다. 울릉도 주민들은 섬의 환경과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이름을 지어 명명하기 십상이다. 두개의 작은 돌로 된 섬이므로 초기에 정착한 주민들은 특정한 이름이 없이 「돌섬」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 불렀을 것이다. 울릉도 관리사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호칭을 당시 관례로서 공문서를 한자어로 표기하여 「石島」라고 고쳐 적었던 것이다. 즉 조선조정의 공식적인 명칭이 「于山島」에서 「석도」로 바뀐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는 「돌섬」이라는 의미로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1904년 일본의 新高號가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서서히 정착되었던 것이다.60) 1882년 조사에 의하면 울릉도에는 전라도 출신이 82%였던 것으로 보아 전라도 사투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석」을 「독」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61) 따라서 「돌섬」을 한자어로 「石島」로 표기했고, 이를 전라도 사투리로 「독도」로 불리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독도」라는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홍택이 「울도군 소속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사실 독도라는 명칭이 최초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러일전쟁 중 일본군함 新高號가 1904년 9월 25일자 보고에서 「리앙코르드암은 한인은 이를 獨島라고 쓰고 일본어부들은 줄여서 리앙꼬드라고 한다」고 했다.62) 이를 보면 1904년 이전부터 울릉도에서는 일본인

57) 「雜報:鬱陵日巡查」, 『皇城新聞』1902年2月28日字.

58) 「雜報, 鬱陵報告」, 『皇城新聞』1903年8月10日字.

59)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203.

60) 독도의 명칭에 관해서는,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p.194-201 참조.

61)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p. 194-201의 명칭에 관한 연구 참조.

62) 『軍艦新高行動日誌』1904年9月25日字.

과 조선인이 혼재하여 살고 있으면서 일본인들은 한인들이 독도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1906년 군수 심홍택이 일본의 독도침탈을 조선조정에 보고할 때도 「본군(鬱島郡) 소속의 獨島가 ...」라고 표기했던 것이다.⁶³⁾ 사실 교통이 불편하던 과거에 독도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섬은 아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공도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에 사람들의 왕래가 제한되었을 시기에 간혹 출몰한 다양한 선박과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되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섬의 지형이나 환경에 따라 독도를 松島, 울릉도를 竹島라고 했는데, 때로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고대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표류민들의 정보에 의해 「신라 혹은 고려의 鬱陵島」라고 불리기도 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松島(1617년 이후), 리양꼬도(1849년 서양지도의 리양꾸르도 표시이후), 竹島(1905년 이후) 등의 호칭으로 변천되어왔다.⁶⁴⁾ 서양군함이 동해에 출몰하여 울릉도 및 독도를 발견하여 이름을 지었다. 1787년 프랑스군함에 의한 울릉도를 다줄레섬, 1849년 프랑스 리양꾸르호에 의한 독도를 리양꾸르암으로 이름 지어졌다. 그 외에도 1854년 러시아군함에 의해 독도를 마날라이 올리브차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이들 이름들이 간혹 서양지도나 서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6. 근대 한국침략과 식민지통치기의 지위와 명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마네(島根縣)현에 거주하는 어부들은 조상대대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알고 있었다. 일본어부 中井養三郎는 한국정부가 일본어부의 울릉도 불법침입을 금지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을 시기였던 1903년에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조선정부에 貸與權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었다.⁶⁵⁾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발발했고, 일본해군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함대의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한국해안의 20개의 망루와 울릉도 2곳에 무선전신망루를 설치했다. 그리고 1904년 9월 울릉도에 왕래하던 일본인들로부터 독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독도를 조사하여 망루설치의 적합지로 판단했었다.⁶⁶⁾ 마침 이때에 中井가 일본 農商務省의 수산국장에게 獨島 貸與權를 한국정부에 교섭알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해군성의 수로국장 肝付 少將은 수산국장의 보고를 받고 中井를 불러 일본정부에 「리양꼬 영토편입 및 貸與

63)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p. 194-201의 명칭에 관한 연구 참조

64)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p. 40-41, p. 44.

65) 「中井養三郎履歷書」, 「井養三郎事業經營概要」, 島根縣廣報文書課編 『竹島關係資料』 第 卷 1953. 島根縣教育會編, 『島根縣誌』 1923.

66) 日本海軍軍令府,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제4부제4권, 附錄「備考文書」 제67호, pp. 366-667.

申請願」을 내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하여 中井은 1904년 9월 29일 일본 내무성, 외무성, 농상공부에 신청원을 제출했다. 일본정부는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타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는 형적이 없기 때문에 竹島라는 이름으로 본현(島根縣)소속으로 정한다」고 하여 무주지 영토편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島根縣에 통고되었고, 島根縣은 1905년 2월 22일 「縣告示 제40호」로 현청계시판과 지방신문에 고지했다. 中井은 영토편입 후 독도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일본정부는 세계 각국의 외교관이 도쿄 및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선이 영토편입에 대해 항의할 경우 열강의 간섭을 우려하여 중앙신문과 조선정부에는 통보하지 않고 은밀히 지방신문과 현청 계시판에 고지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中井은 「본도는 울릉도에 부속하고 있는 韓國領土로 생각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블라디보스톡과 울릉도, 일본을 왕래하는 일본인들 사이에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영토로 인정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⁶⁷⁾ 사실 일본은 울릉도 편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단행할 수 없었던 것은 조선조정의 반발에 의한 열강들의 일본침략성에 대한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1417년 한국정부의 공도정책으로 정기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에 일본어부들이 불법 잠입하여 竹島와 松島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1618년, 1660년 경에는 각각 막부로부터 도항면허증을 받아 도항해오다가, 1693년 한일 어부간에 영토분쟁이 발생하여 막부는 1699년 정식으로 이 섬들을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明治시대에도 러일전쟁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러일전쟁 중에 입장을 바꾸어 「무인도」라고 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했으며, 일본해군성은 1905년 7월 독도에 해군망루를 설치했고 러일전쟁 종결 후에는 이를 철거했다.⁶⁸⁾

한국정부에서는 독도가 러일전쟁 중에 몰래 일본영토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1년 후 시마네 현 관리가 울릉도에 들어와서 독도가 일본영토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울릉군수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울릉군수 심홍택은 1906년 3월 29일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에 영토편입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원도관찰사를 통하여 내부에 보고했다.⁶⁹⁾

이미 이때는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서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 조정에 협박하여 대외적으로 조선으로부터 외교권을 이양 받았다는 형식으로 1905년 11월 17일 외교권을 강탈해갔었고, 1906년 1월 한국의 외교부를 폐지하여 2월 1일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한제국 내부는 보고를 받고, 1906년 5월 1일자로 「독도를 日本屬地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⁷⁰⁾ 의정부 참정대신(정부수반은

67) 「中井養三朗事業經營概要」, 履歷書の付屬文書, 1910年 中井가 作成함.

68)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第4部 第4卷, p. 276.

69) 「報告書號外」, 『各觀察使道案』第1冊, 양태진편, 『韓國國境領土關係文獻集』, 1979.

1906년 4월 29일자로 지령 제 호로 「전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의 행동을 다시 조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⁷¹⁾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도 일제의 독도침탈을 항의했고, 재야에서도 黃玟은 『梧下記聞』, 『梅泉野錄』에서도 독도침탈을 비난했다.⁷²⁾ 그러나 한국의 외교권이 통감부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항의서한을 일본의 무성에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다.⁷³⁾ 즉 대한제국에서는 일방적인 일본의 독도편입을 조선 영토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하여 일본의 편입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일본은 조선조정이 요구한 울릉도에 불법 침입한 일본인들의 철수를 거부하고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 어민 보호를 명목으로 순사를 배치하여 울릉도를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당연히 독도도 일본인들의 침입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中井 같은 일본어부가 어업독점권을 위해 한국정부에 요청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정부의 독도 편입조치는 이처럼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불법 점유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일본정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조치를 「무주지」 선점에 의한 정당한 영토편입조치라고 하는데, 이는 1910년 한일합병을 앞둔 상태에서 행해진 1차적인 조선영토 불법탈취 행위였던 것이다. 특히 鬱島군수 沈興擇이 「본군(鬱州郡) 소속의 獨島」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沈興擇이 울도 군수로서 1900년에 「石島」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관할지역으로 지정된 獨島를 관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일본이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했다는 것은 단지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7. 전후부터 대일강화 시기까지의 지위

패전이후 일본의 영토처리가 중요한 과제였으며, 한일간의 국경선을 획선해야 했다. 일본 東京에 설치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연합국이 전시 중에 체결한 카이로,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정치상 행정상으로 「독도를 울릉도와 제주도」와 더불어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주한미군에 이관하여 한국영토로 간주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033 호 제 항 를 발령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을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이내에 접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을 정했다. 독도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더불어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영토로 반환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과 더불어 독도가 조선 어민들의 어업기지가 되고 어업종사장이 되었다.

70) 「雜報: 無變不有」, 『大韓每日申報』1906年5月日字

71) 「報告書號外에 대한 指令 第3號」, 『各觀察使道案』第 冊 光武10年4月29日條

72)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49.

73)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p. 49.

독도는 그 이후 줄곧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해왔다. 일본은 연합국의 일본점령기에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관할 하에 있던 독도에 대해 주일미군의 공군훈련기지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미일합동위원회는 1952년 2월 28일 미일안보조약하의 행정협정에 의해 7월 26일 「미군용 시설과 토지에 관한 협정」에서 독도를 포함시킨 적이 있었으나, 주일미공군의 오폭으로 인한 한국어민희생사건에서 한국정부의 항의로 1953년 3월 19일 독도(일본명 竹島)를 미공군 연습장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일본영토화의 의도가 좌절되고 말았다. 주일미군의 공군기지로 지정되었던 7개월 간도 사실상 한국어민이 어업기지로써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협상과정에서 교섭당사국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에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연합국측은 독도 소속을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은 협상 당사국이 아니어서 연합국측에 직접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연합국 중에서 특히 미국이 한때 일본주장을 수용하려고 하자, 뉴질랜드, 영국, 호주 등 다른 연합국의 항의에 의해 일본의 의도는 또 다시 무산되었다. 결국 연합국측은 쌍방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무인도에 한해서는 강화조약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문제를 회피해갔던 것이다. 그래서 연합국 측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대일강화조약은 독도문제와 무관하여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일본이 패전한 후, 독도근해는 맥아더라인으로 보호받으면서 줄곧 한국어민들이 어업기지로써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면, 일본에서 연합국(점령군사령관 맥아더)이 철수하게 되고 자연히 맥아더라인이 없어져서 일본인들의 독도근해 불법조업을 우려하여 52년 4월 대일강화조약의 비준을 앞두고 1952년 1월 18일 독도(독도기점 8해리)를 포함하는 대통령주권선언(평화선)을 선포했다. 그 이후 평화선을 침범하는 불법 일본어선에 대해 나포 등 강력히 조치했다. 일본은 한국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여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철저히 반박해왔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통치시기 36년을 제외하고는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점유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일본은 한국전쟁기에 독도점령을 시도했으나 울릉도민에 의해 결성된 독도의용군에게 저지당했다. 한국정부는 한국전쟁 종결과 더불어 1954년 민간인이었던 독도의용군을 대신해서 해양경찰대를 독도에 배치하여 오늘날까지 고유영토로서 독도를 지키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협상과정에서도 독도영유권 협상을 요구한바 있었으나, 한국정부는 고유영토론으로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1999년 1월 일본은 어업협정을 요구하여 독도를 중간수역 개념인 잠정협정수역 안에 포함하는 협정을 맺게 했다. 이것은 어업권에

한하는 협정이지만,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한국정부는 여전히 어업협정은 어업에 한하고 독도영토주권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독도주변 12해리를 실효적 점유를 통해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독도는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성과 실효적 점유라는 국제법적 합법성 위에서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한국영토의 일부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역사성을 무시하고 1905년 조선침략과정에 불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하여 「무주지 선점」이라는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를 불법적으로 무력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8. 나오면서 -전망과 해결방안-

이상과 같이 독도의 역사성과 더불어 이를 둘러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을 고찰해보았다. 일본의 영유권주장의 특수성과 한국영토 보전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는 다음과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일본영토는 고대에 西國에 국한되었고, 鎌倉시대에 東國으로 확장되었으며, 安土桃山시대에 동북지방의 松前藩까지 확장되었으며 조선침략에는 실패했다. 江戸시대에는 쇄국정책으로 영토확장의 의욕이 없어서 松前藩에 영토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하면서 열본열도 주변 소국과 대륙을 향해 영토확장을 단행했다. 급기야 세계대전 말기에는 광활한 아시아지역을 점령하여 영토확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연합국의 반격으로 그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영토는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明治유신 초기의 영토에 국한되고 말았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영토의 변천은 근대시대에 들어와서 확장과 축소를 반복한 것인데, 현재 일본의 영토분쟁은 근대에 확장된 영토 중에 대일강화조약에서 미결된 지역에 대한 축소와 확장의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영토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특히 일본영토는 다른 어느 국가의 영토보다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 근대일본의 영토는 대개 모두가 극단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확장과 축소를 반복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영토의 특성으로서 한국영토의 정체성은 고조선시대에 그 정통성을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지역에서 고유성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영토는 역사의 변천에 따라 축소와 확장을 반복해왔으나,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축소되어왔다. 따라서 한국의 영토의식은 외세의 영토침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최소한의 고유성을 유지하겠다는 성향이 크다. 현 시점에서 그것도 넓게 잡아서 한국영토로 회복되어야 할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는 곳은 북한지역과 간도지역정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지역은 가까운 시기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간도지역은 현재

중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영토회복개념은 매우 희박하고, 단지 한국영토로서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이다. 독도의 경우는 한국영토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고유한 민족영토라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강한 영토확보의지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한일 양국간의 영토관의 차이점에서 볼 때 향후 독도영유권 분쟁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영토는 불변의 것이 아니고, 유연성을 갖고 있다. 한국영토는 근대에 일본에 완전히 수탈당한 적이 있다. 일본이 한국영토를 수탈한 논리는 강한 일본이 약한 조선을 보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약한 조선은 극단적인 방법인 전쟁에 의하지 않고 「협박」이라는 수단에 간단히 강한 일본에 영토를 양보했다. 근대일본은 무력협박, 위협, 때로는 전쟁 등의 다양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해왔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 근대한국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강대국에 쉽게 영토를 양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본은 영토확장욕이 상당히 강하다. 따라서 일본이 반드시 독도 영토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갖게 된다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영토권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상대국인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협박과 위협이라는 가벼운 수단으로도 독도 영유권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혼란상황에서 외세의 압력에 쉽게 굴하여 고유영토를 양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차원에서 독도 영토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외세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창출이 필요불가결하다. 현재 동아시아 3국은 영토분쟁 중에 있다. 특히 한중, 한일간의 영토분쟁의 특징을 보면 한국영토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일의 내셔널리즘에 의한 영토분쟁이다. 가장 이상적인 영토분쟁의 해결방법은 역사성의 행방에 따라서 영토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이 확장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은 지역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역사성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 해결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토분쟁해결의 최선책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양자 파멸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현상유지상태를 지속시켜 세월의 변화와 추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시대 시대의 영토분쟁 해결방법에 맡기는 것이 좋을 듯이다.

【參考文獻】

- 신용하(1996)『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pp.28-328
- 이수광,『芝峰類說』卷2, 地理部, 島の 鬱陵島條.
- 崔長根(1994)「明治政府の朝鮮東海における領土政策」,『大學院年報』 참조

- 『三國史記』新羅本紀 卷4, 智證麻立干 13년: 列傳 卷44, 異斯夫條
- 『高麗史』卷58, 地理志3, 蔚珍縣條
- 『世宗實錄』卷153, 地理志 江原道 蔚珍縣條
- 『大日本史』열진 5(卷234), 高麗
- 『大日本史』第2篇의 5, 寬弘元年 3月 7日條
- 『高麗史』卷58, 地理志3, 蔚珍縣條
- 『太宗實錄』太宗7年3月 庚午條
- 『太宗實錄』太宗16年9月 庚寅條
- 『太宗實錄』太宗17年2月 乙丑條
- 『世宗實錄』卷29, 世宗7年8月 甲戌條.
- 『世宗實錄』卷73, 世宗18年 潤6月 甲申條
- 『新增東國輿地勝覽』,卷45, 蔚珍縣條
- 『邊例集要』卷17, 鬱陵島條
- 『增補文獻備考』卷31, 輿地考19, 于山島, 鬱陵島條.
- 『隱州視聽合記』卷1, 國代記部
- 「外務省より太政官辦官への伺書」,「朝鮮國派遣員に對する査事項指令に關する伺並に之に對する太政官の内達書」,日本外務省調査部編,『日本外交文書』第2 卷第3 冊, 文書番號574, 1869年11月1日字, pp. 265-268.
- 日本外務省調査部編,『日本外交文書』제3권 事項6, 文書番號 87, 1870年4月15日字,「外務省出仕佐田等ノ朝鮮國交際始末内探書」,『朝鮮國交際始末内探書』, p. 137.
- 「外務省出仕佐田等の朝鮮の國交際始末内探書」,『朝鮮國交際始末内探書』 日本外務省調査部編,『日本外交文書』제3권 事項6 文書番號87, 1870年4月15日字, p. 137.
- 「太政官指令文書」,『公文錄』内務省之部1, 1877年3月20日條.
- 「日人ノ蔚陵島ノ伐木禁止ノ件」,『舊韓國外交文書』제1권 日案, 文書番號 75.
- 『日本外交文書』제16권, 事項10, 文書番號132, 「引上者ノ處置ニ關スル件」, 文書番號 133, pp.311-338.
- 「照覆」,『内部來去案』第13冊, 光武4年9月12日條. 「照會」, 光武4年9月15日條
- 「雜報: 照駁收稅」,『皇城新聞』1900年9月14日字.
- 「雜報: 鬱島設校」,『皇城新聞』1901年2月27日字
- 「雜報:鬱陵日巡查」,『皇城新聞』1902年2月28日字.
- 「雜報, 鬱陵報告」,『皇城新聞』1903年8月10日字.
- 「中井養三郎履歷書」,「井養三郎事業經營概要」,島根縣廣報文書課編『竹島關係資料』第1 卷 1953. 島根縣教育會編,『島根縣誌』1923.
- 日本海軍軍令府,『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4부제4권, 附錄「備考文書」제 67호, pp. 366- 667.
- 「報告書號外」,『各觀察使道案』第1冊, 양태진편,『韓國國境領土關係文獻集』, 1979.

要 旨

本論文は時代別に獨島の歴史性を明確にしたものである。日本政府は韓國政府に對して獨島の領有權を主張している。獨島は地理的に東海のまっ中に位置して人が住めない二つの小さい岩礁になっていて、朝鮮時代の朝廷は古代から朝鮮領土として認識していたことを王朝實錄に記載していた。獨島は天氣の良い日に鬱陵島から見える島である。獨島は鬱陵島の人にとって同島の屬島であるとの認識を持っていたようだ。したがって疑い無く獨島は鬱陵島とは不可分の關係にあった島であった。幕府時代に日本政府は鬱陵島の渡航を禁止していたが、近代になって、日朝修好條約（1976年）以後に日本人の漁夫が頻繁に鬱陵島を不法侵入することになった。朝鮮政府はその不法侵入を指摘して日本政府に對して漁民の撤收を要求したが、日本政府は韓國領土として認めつつありながら漁夫の送還については消極的であった。明治の日本政府は一時期鬱陵島を日本領土としての編入を試みたことがあったが、朝鮮領土である明確な証據があったため編入を諦めていた状況のなかに、獨島に對しては無人島であると斷定して軍事戰略上の必要に乗じて日露戰爭中に日本領土に編入した。歴史的に見ると、古代中世近世近代時代にわたって獨島が朝鮮政府から韓國領土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証據はあったが、日本が領土として認識していたような証據はどこにも見あたらない。にもかかわらず、領有權を主張している現代の日本政府は韓國領土として獨島の歴史性を認めていない。その理由として朝鮮王朝實錄に獨島の名称が多様に現れるからそれは獨島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鬱陵島から天氣が良い日に見える島は獨島しかないことは事實のである。したがって多様に現れる島名は獨島のことをいうに間違いない。

キーワード: 獨島, 領有權, 韓國領土, 國境紛爭, 領土紛爭, 타케시마(竹島), 鬱陵島

투 고 : 2004. 11. 30
1차 심사 : 2004. 12. 11
2차 심사 : 2005. 1. 4

住 所 : (706-744)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보성APT 2차 102동 1508호
電 話 : 019-553-5733(휴대), 053-791-5722(자택)
e-mail : nihonbu@snu.ac.kr